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의 기초 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Q 이 상품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이 상품은 경영인 사망시 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은퇴시 퇴직금 부족 등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인 또는 법인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정기보험으로 피보험자는 해당 법인에서 재직중인 "CEO(최고 경영자), 등기임원 및 일반임원"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로 합니다.

Q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는 무엇이며,보험료 납입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 보장형 계약

- 추가납입 불가능

■ 적립형 계약

1)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납입보험료 중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과 「당해 보험료 납입직전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의 합계액」의 차액은 기본보험료로 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전환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로서 납입보험료 중 기본보험료 초과부분을 말합니다.

3) 보험료 납입한도

가.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300%이내로 하고, 경과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납입보험료 한도는 시 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계산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납입보험료 한도
 - = 월납 기본보험료의 300% ×전환 후 경과월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나. '가'목에서 시중금리에서 따라 보험료의 1회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국고채수익률이 이 적립형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만기 국고채권의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다. '가'목의 전환 후 경과월수는 전환시를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Q |중도인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보장형 계약

- 중도인출 불가능

■ 적립형 계약

- 계약자는 전환일 이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연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10만원 이상 천원 단위). 다만,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은 연간 기본보험료(월납 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우량체란 무엇이며, 건강우대특약(무배당) 가입시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나나요?

- A 우량체란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표준체에 해당하며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20세 이상인 피보험 자를 말합니다.
 - ① 1년이상 비흡연자
 - ② 수축기혈압 140mmHg미만, 이완기혈압 90mmHg미만인 자
 - ③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 17~26kg/m²인 자
 - ※ 보험료 예시

| 구분 | 표준체 가입 | 표준체 가입자 보험료 | |]자 보험료 |
|-----|---------|-------------|---------|---------|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30세 | 720,000 | 563,000 | 696,000 | 547,000 |
| 40세 | 795,000 | 623,000 | 769,000 | 605,000 |
| 50세 | 881,000 | 689,000 | 853,000 | 670,000 |

(㈜) 가입예시 기준: 주보험[보너스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15% 체증형, 1억, 전기납]

Q 최저해약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A - 최저해약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로 보장해주는 해약환급금으로서, 해당상품의 적용이율[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이율]로 계산된 해약환급금을 말합니다. 이 보험상품은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보너스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및 라이트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과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증하지 않는 프라임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저해약환급금 보증 관련 비교 안내 1

| 구분 | | 보너스형 | (최저해약환급금 | 보증형) | 프라임형(| 프라임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 | |
|-----------|-----------------------|---------------|---------------|---------------|---|--------------------|--------------|--|
| | 보험료 산출이율 연복리 1.75% | | | 연복리 2.75% | | | | |
| ヹ |] 저보증이율 | | 가입 후 10년 | 이내 연복리 1.0 |)%, 10년 초과 <u></u> | %, 10년 초과 연복리 0.5% | | |
| | 월보험료 | | 795,000원 | | 626,000원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대비 21.3% 낮음) | | | |
| | 보험료총액 | | 524,700,000원 | | 413,160,000원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대비 21.3% 낮음) | | | |
| | 보험료 수준 | ъ | 보증형 대비 높 | 음 | <u>]</u> | 보증형 대비 낮음 | 5 | |
| 비교 설명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여부 | | 보증 | | | 미보증 | | |
| υO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 부과 | | 미부과 | | | |
| | 경과기간 | 최저 사망보험금 | 연복리B 2.4% | 연복리A 2.4% | 최저 사망보험금 | 연복리B 2.4% | 연복리A 2.4% | |
| 사망 | 10년 | 1.75 | 1.77 | 1.77 | 1.75 | 1.75 | 1.75 | |
| 사망 보험금 | 20년 | 3.25 | 3.34 | 3.34 | 3.25 | 3.25 | 3.25 | |
| (억원) | 30년 | 4.75 | 5.00 | 5.00 | 4.75 | 4.75 | 4.75 | |
| | 40년 | 6.25 | 6.75 | 6.75 | 6.25 | 6.25 | 6.25 | |
| | 50년 | 7.75 | 8.64 | 8.64 | 7.75 | 7.75 | 7.75 | |
| | 경과기간 | 최저 해약환급금 | 연복리B 2.4% | 연복리A 2.4% |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B 2.4% | 연복리A 2.4% | |
| રું! | 10년 | 95.4% | 97.6% | 97.6% | 90.0% | 96.2% | 96.2% | |
| 환 급 | 20년 | 102.9% | 108.4% | 108.4% | 87.3% | 105.0% | 105.0% | |
| 륟 | 30년 | 107.3% | 116.6% | 116.6% | 79.3% | 109.5% | 109.5% | |
| | 40년 | 105.7% | 119.6% | 119.6% | 55.7% | 102.8% | 102.8% | |
| | 50년 | 72.7% | 92.6% | 92.6% | 3.1% | 42.2% | 42.2% | |
| | 입완료시점 최저해약환급금 | 2.3% | 3.5% | 3.5% | 0.0% | 0.0% | 0.0% | |
| | 용 부과율(금액) | (11,939,652원) | (18,391,455원) | (18,391,455원) | (0원) | (0원) | (0원) |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 관련 비교 안내 2

| | 구분 | 라이트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 | 프라임형(최 | 프라임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 | | |
|---------------------|-----------------|-------------------|---------------|--|--------------------|-----------------------|--------------|--|
| | 보험료 산출이율 | 연복리 1.75% | | | 연복리 2.75% | | | |
| 최 |] 저보증이율 | | 가입 후 10년이 | 내 연복리 1.0%, | 10년 초과 연복 | H리 0.5% | | |
| | 월보험료 750,000원 | | | 626,000원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대비 16.5% 낮음) | | | | |
| j | 보험료총액 | | 495,000,000원 | 5,000,000원 413,160,000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다 | | | _ | |
| | 보험료 수준 | Ţ | 기보증형 대비 높음 | <u>)</u> | 노 | L증형 대비 낮 _는 | <u> </u> | |
| 비교 설명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여부 | | 보증 | | | 미보증 | | |
| 50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 부과 | | | 미부과 | | |
| | 경과기간 | 최저 사망보험금 | 연복리B 2.4% | 연복리A 2.4% | 최저 사망보험금 | 연복리B 2.4% | 연복리A 2.4% | |
| 사망 | 10년 | 1.75 | 1.77 | 1.77 | 1.75 | 1.75 | 1.75 | |
| 사항 보험금 | 20년 | 3.25 | 3.34 | 3.34 | 3.25 | 3.25 | 3.25 | |
| (억원) | 30년 | 4.75 | 5.00 | 5.00 | 4.75 | 4.75 | 4.75 | |
| | 40년 | 6.25 | 6.75 | 6.75 | 6.25 | 6.25 | 6.25 | |
| | 50년 | 7.75 | 8.64 | 8.64 | 7.75 | 7.75 | 7.75 | |
| | 경과기간 | 최저 해약환급금 | 연복리B 2.4% | 연복리A 2.4% |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B 2.4% | 연복리A 2.4% | |
| 환 | 10년 | 93.7% | 96.1% | 96.1% | 90.0% | 96.2% | 96.2% | |
| 급 | 20년 | 101.2% | 106.7% | 106.7% | 87.3% | 105.0% | 105.0% | |
| 륟 | 30년 | 107.5% | 116.8% | 116.8% | 79.3% | 109.5% | 109.5% | |
| | 40년 | 106.4% | 120.3% | 120.3% | 55.7% | 102.8% | 102.8% | |
| | 50년 | 71.7% | 91.6% | 91.6% | 3.1% | 42.2% | 42.2% | |
| 납입완료시점 누적최저해약환급금 | | 2.3% | 3.5% | 3.5% | 0.0% | 0.0% | 0.0% | |
| | 용 부과율(금액) | (11,417,794원) | (17,551,439원) | (17,551,439원) | (0원) | (0원) | (0원) | |

<기준: 남자 40세, 주보험, 15%체증형, 가입금액 1억, 95세만기, 전기납, 표준체>

- 1. 연복리B 2.4%는 '평균공시이율(2.75%)'과 '공시이율 연복리 2.4%(2024년 4월 현재)' 중 작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2.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3. 연복리A 2.4%는 공시이율 연복리 2.4%(2024년 4월 현재)를 적용합니다.
- 4. 상기 예시된 보너스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및 라이트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의 환급률은 각 예시이율로 계산 된 해약환급금과 최저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예시됩니다.
- 5. 상기 보증비용 부과율은 「납입기간까지 부과된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납입기간까지의 누적 보험료」를 의 미합니다.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은 계약 해지시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상기 비교표의 환급률 차이를 일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류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보장형계약]

- 보너스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 10/15/20% 체증형
- 라이트형(최저해약화급금 보증형) : 10/15/20% 체증형
- 프라임형(최저해약화급금 미보증형) : 15% 체증형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적립형계약]

2. 보험기간

- 기본보험기간 : 피보험자의 95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플러스보장보험기간 :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신까지
- ※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의 경우 기본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 보너스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 초과계약자적립액에 「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과 유지보너스 발생후 예정적립액 중 큰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 * 라이트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 초과계약자적립액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 * 프라임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 초과계약자적립액에 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을 합한 금액

3. 보험료 납입기간

- 보장형 계약 : 80세납, 전기납

- 적립형 계약 : 종신

4.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5. 가입나이

- 보장형 계약 : 최저 20세 ~ 최고 70세

- 적립형 계약 : 최저 20세 ~ 최고 80세

※ 체증형 및 성별 또는 납입기간별로 가입나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만나이가 아닌 나이는 보험나이입니다. 보험나이에 대한 설명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가입한도

- 주보험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이상
 - ※ 체증형 및 가입나이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95세 시점 최대 체증금액이 200억 초과시 가입 불가합니다.

7. 건강진단 여부

이 보험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 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보너스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보장형계약] | | | | | |
|-----|---|--|--|--|--|--|
| 즈케아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라이트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보장형계약] | | | | | |
| 주계약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프라임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보장형계약] | | | | | |
|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적립형계약] | | | | | |
| | 건강우대특약(무배당) | | | | | |
| | 특별조건부특약 | | | | | |
|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 | | | |
| 제도성 | 플러스연금전환특약(무배당) | | | | | |
| 투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 | | | |
| | 사후정리특약 | | | | | |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 | | | |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 | | | |

2.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의 내용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장내용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계약

[보장형 계약]

I.보너스형 및 라이트형

(1)기본보험기간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 |
| | - 계약일부터 5년 경과 연계약해당일의 | 보험가입금액 + 가산보험금 | |
| 0-10-2-2 | | 10% 체증형 | 5년 경과 연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 증하여 계산한 금액" + 가산보험금 |
| 사망보험금 | - 5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이후 | 15% 체증형 | 5년 경과 연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5%씩 정액 체증하여 계산한 금액" + 가산보험금 |
| | | 20% 체증형 | 5년 경과 연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정액 체 증하여 계산한 금액" + 가산보험금 |

- ㈜ 1. 가산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초과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가산보험금도 증가하거나 감소할수 있습니다.
- 2. 초과계약자적립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예정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자적립액"은 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예정계약자적립액"도 유지보너스 발생후 예정적립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상기 지급금액에서 가산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가산보험금과 합산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4.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에서 정한 금액에 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단, 유지보너스 지급 대상건에 한함]」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5. 회사는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유지보너스 적립액[단,유지보너스 지급 대상건에 한함]을 ㈜4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환한 부분에 대한 「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단, 유지보너스 지급 대상건에 한함)」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합니다. 이 때,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계약자적립액 및 예정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합니다.

(2)플러스보장보험기간

※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플러스보장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 |

㈜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기간 만료시점의 초과계약자적립액에 「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과 유지보너스 발생후 예정적립액 중 큰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Ⅱ.프라임형

(1)기본보험기간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 피보험자가 기본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 |
| 사망보험금 | - 계약일부터 5년 경과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 보험가입금액 + 가산보험금 | |
| 사망보험금 | - 5년 경과 연계약해당일 이후 | 5년 경과 연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 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5%씩 정액 체 증하여 계산한 금액" + 가산보험금 | |

- ㈜ 1. 가산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초과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가산보험금도 증가하거나 감소할수 있습니다.
- 2. 초과계약자적립액은 계약자적립액에서 예정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자적립액"은 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 3. 상기 지급금액에서 가산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가산보험금과 합산하여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4.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에서 정한 금액에 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을 합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5. 회사는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유지보너스 적립액을 ㈜4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한 이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환한 부분에 대한 「유지보너스 적립액 및 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은 지급하지않습니다.
- 6.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합니다. 이 때,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계약자적립액 및 예정계약자적립액을 계산 합니다.

(2)플러스보장보험기간

※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플러스보장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플러스보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 |
| | 장보험기간의 보험가입금액은 기본보험기간 만료시점의 합한 금액을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칭 | |

[적립형 계약]

|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 |

- ㈜ 1. 「계약자적립액」이란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을 더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적립형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2. 「공시이율」(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3.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적립액의 5%와 적립형계약 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4.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시 상기 사망보험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유지보너 스 적립액 또는 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단, 유지보너스 지급 대상건에 한함)」은 없습니다.
- 6.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③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1. 보장부분 적용이율

Q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이 상품의 보너스형 및 라이트형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1.75%이며, 프라임형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복리 2.75%입니다.

2.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공시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액을 부리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이 상품은 객관적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2024년 4월 현재 [보장형계약]의 공시이율은 연복리 2.4%이고, [적립형계약]의 공시이율은 연복리 2.61%입니다. 또한, '보장형계약'의 공시이율은 보험가입시점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하며, '적립형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이상품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 * 객관적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여도 회사에서 보증해 드리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로서 이 상품에 적용된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0.5%입니다.

4. 위험률

Q 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 남자 | | | | 여자 | |
|---------------|----------|----------|----------|----------|----------|----------|
| | 20세 | 40세 | 60세 | 20세 | 40세 | 60세 |
| 무배당 예정 경험 사망률 | 0.000290 | 0.000830 | 0.003500 | 0.000220 | 0.000520 | 0.001640 |

- 기준 : 표준체

5.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안내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우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비용 안내]

※ 이 상품은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최저해약환급금(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에 한함) 및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의 보증비용을 차감합니다.

[보너스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주보험 납입보험료의 0.65%

+ 매년 주보험 계약자적립액(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 포함)

의 0.10%(매월 0.00833333%)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주보험 계약자적립액의 0.05%(매월 0.00416667%)

[라이트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주보험 납입보험료의 0.7%

+ 매년 주보험 계약자적립액의 0.10%(매월 0.00833333%)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주보험 계약자적립액의 0.05%(매월 0.00416667%)

[프라임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주보험 계약자적립액의 0.35%(매월 0.02916667%)

2. 해약환급금 예시

[보너스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기준 : 남자, 40세, 전기납, 보너스형, 15% 체증형, 가입금액 1억원, 월납, 표준체)

| 경과 | 납입 | 최저해역 | 부환급금 | 연복리B : | 2.4% 가정 | 연복리A 2 | 2.4% 가정 |
|-----|-------------|-------------|-------------|-------------|---------|-------------|---------|
| 기간 | 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2,385,000 | 0 | 0.0 | 0 | 0.0 | 0 | 0.0 |
| 6개월 | 4,770,000 | 0 | 0.0 | 0 | 0.0 | 0 | 0.0 |
| 9개월 | 7,155,000 | 0 | 0.0 | 0 | 0.0 | 0 | 0.0 |
| 1년 | 9,540,000 | 0 | 0.0 | 0 | 0.0 | 0 | 0.0 |
| 2년 | 19,080,000 | 5,179,570 | 0.0 | 5,261,050 | 27.5 | 5,261,050 | 27.5 |
| 3년 | 28,620,000 | 15,374,850 | 27.1 | 15,556,910 | 54.3 | 15,556,910 | 54.3 |
| 4년 | 38,160,000 | 25,716,140 | 53.7 | 26,041,690 | 68.2 | 26,041,690 | 68.2 |
| 5년 | 47,700,000 | 36,207,420 | 67.3 | 36,719,620 | 76.9 | 36,719,620 | 76.9 |
| 10년 | 95,400,000 | 91,034,000 | 75.9 | 93,203,670 | 97.6 | 93,203,670 | 97.6 |
| 20년 | 190,800,000 | 196,511,790 | 95.4 | 206,953,640 | 108.4 | 206,953,640 | 108.4 |
| 30년 | 286,200,000 | 307,215,220 | 102.9 | 333,961,880 | 116.6 | 333,961,880 | 116.6 |
| 40년 | 381,600,000 | 403,366,750 | 107.3 | 456,738,300 | 119.6 | 456,738,300 | 119.6 |
| 50년 | 477,000,000 | 346,912,860 | 105.7 | 441,773,050 | 92.6 | 441,773,050 | 92.6 |
| 54년 | 515,160,000 | 128,503,270 | 72.7 | 251,624,230 | 48.8 | 251,624,230 | 48.8 |
| 55년 | 524,700,000 | 26,035,050 | 24.9 | 159,445,310 | 30.3 | 159,445,310 | 30.3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부과율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전기납, 보너스형, 15% 체증형, 가입금액 1억원, 월납, 표준체)

| 구분최저보증이율 가정연복리B 2.4% 가정연복리A 2.4% 가정납입완료시점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부과율2.3%3.5% | (10 17) 11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 | | | | | | | |
|---|--|-----------|--------------|--------------|--|--|--|--|--|
|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2.3% 3.5% 3.5% | 구분 | 최저보증이율 가정 | 연복리B 2.4% 가정 | 연복리A 2.4% 가정 | | | | | |
| |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 2.3% | 3.5% | 3.5% | | | | | |

㈜1. 상기 보증비용 부과율은 「납입기간까지 부과된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납입기간까지의 누적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라이트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기준 : 남자, 40세, 전기납, 라이트형, 15% 체증형, 가입금액 1억원, 월납, 표준체)

[남자] (단위: 원, %)

| 경과 | 납입 | 최저해약환급금 | | 연복리B 2 | 2.4% 가정 | 연복리A 2.4% 가정 | |
|-----|-----------|-------------|-------|-------------|---------|--------------|-------|
| 기간 | 보험료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2250000 | 0 | 0.0 | 0 | 0.0 | 0 | 0.0 |
| 6개월 | 4500000 | 0 | 0.0 | 0 | 0.0 | 0 | 0.0 |
| 9개월 | 6750000 | 0 | 0.0 | 0 | 0.0 | 0 | 0.0 |
| 1년 | 9000000 | 0 | 0.0 | 0 | 0.0 | 0 | 0.0 |
| 2년 | 18000000 | 5,179,570 | 28.7 | 5,261,050 | 29.2 | 5,261,050 | 29.2 |
| 3년 | 27000000 | 15,374,850 | 56.9 | 15,556,910 | 57.6 | 15,556,910 | 57.6 |
| 4년 | 36000000 | 25,716,140 | 71.4 | 26,041,690 | 72.3 | 26,041,690 | 72.3 |
| 5년 | 45000000 | 36,207,420 | 80.4 | 36,719,620 | 81.5 | 36,719,620 | 81.5 |
| 10년 | 90000000 | 84,356,000 | 93.7 | 86,525,670 | 96.1 | 86,525,670 | 96.1 |
| 20년 | 180000000 | 182,326,000 | 101.2 | 192,158,770 | 106.7 | 192,158,770 | 106.7 |
| 30년 | 270000000 | 290,342,000 | 107.5 | 315,393,770 | 116.8 | 315,393,770 | 116.8 |
| 40년 | 360000000 | 383,297,000 | 106.4 | 433,434,640 | 120.3 | 433,434,640 | 120.3 |
| 50년 | 450000000 | 323,041,000 | 71.7 | 412,526,090 | 91.6 | 412,526,090 | 91.6 |
| 54년 | 486000000 | 102,916,000 | 21.1 | 219,595,240 | 45.1 | 219,595,240 | 45.1 |
| 55년 | 495000000 | - | - | 126,680,410 | 25.5 | 126,680,410 | 25.5 |

㈜1. 상기 예시된 연복리B 2.4%는 '평균공시이율(2.75%)'과 '공시이율 연복리 2.4%(2024년 4월 현재)' 중작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2.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3. 상기 예시된 연복리A 2.4%는 '공시이율 연복리 2.4%(2024년 4월 현재)'를 적용합니다.
- 4. 이 상품은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보너스형 및 라이트형은 공시이율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최저해약환급금"중 많은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5. 최저해약환급금은 "적용이율[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연복리 1.7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 6.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7.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8. 상기 예시된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합 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 9.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에는 유지보너스 금액이(보너스형(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에 한함) 반영되어 있으며, 유지보너스 발생 경과시점(연계약해당일)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은 해당 시점에 발생하는 유지보너스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시 예시된 금액과다를 수 있습니다.
- 10.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부과율 예시]

(기준 : 남자, 40세, 전기납, 라이트형, 15% 체증형, 가입금액 1억원, 월납, 표준체)

| 구분 | 최저보증이율 가정 | 연복리B 2.4% 가정 | 연복리A 2.4% 가정 | |
|----------------------------------|-----------|--------------|--------------|--|
| 납입완료시점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부과율 | 2.3% | 3.5% | 3.5% | |

㈜1. 상기 보증비용 부과율은 「납입기간까지 부과된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납입기간까지의 누적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 보험상품의 보너스형과 라이트형은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증비용을 부담하는 상품입니다.

[프라임형(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기준 : 남자, 40세, 전기납, 프라임형, 15% 체증형, 가입금액 1억원, 월납, 표준체)

[남자] (단위: 원, %)

| 경과 | 납입 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가정 | | 연복리B 2.4% 가정 | | 연복리A 2.4% 가정 | |
|-----|-------------|-------------|------|--------------|-------|--------------|-------|
| 기간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878,000 | 0 | 0.0 | 0 | 0.0 | 0 | 0.0 |
| 6개월 | 3,756,000 | 0 | 0.0 | 0 | 0.0 | 0 | 0.0 |
| 9개월 | 5,634,000 | 0 | 0.0 | 0 | 0.0 | 0 | 0.0 |
| 1년 | 7,512,000 | 0 | 0.0 | 0 | 0.0 | 0 | 0.0 |
| 2년 | 15,024,000 | 4,443,950 | 29.5 | 4,621,160 | 30.7 | 4,621,160 | 30.7 |
| 3년 | 22,536,000 | 12,159,320 | 53.9 | 12,556,350 | 55.7 | 12,556,350 | 55.7 |
| 4년 | 30,048,000 | 19,917,670 | 66.2 | 20,625,290 | 68.6 | 20,625,290 | 68.6 |
| 5년 | 37,560,000 | 27,718,950 | 73.7 | 28,830,480 | 76.7 | 28,830,480 | 76.7 |
| 10년 | 75,120,000 | 67,671,810 | 90 | 72,291,430 | 96.2 | 72,291,430 | 96.2 |
| 20년 | 150,240,000 | 131,299,000 | 87.3 | 157,880,630 | 105 | 157,880,630 | 105.0 |
| 30년 | 225,360,000 | 178,935,710 | 79.3 | 246,953,680 | 109.5 | 246,953,680 | 109.5 |
| 40년 | 300,480,000 | 167,520,010 | 55.7 | 309,002,460 | 102.8 | 309,002,460 | 102.8 |
| 50년 | 375,600,000 | 11,786,260 | 3.1 | 158,748,840 | 42.2 | 158,748,840 | 42.2 |
| 54년 | 405,648,000 | 12,023,760 | 2.9 | 26,295,650 | 6.4 | 26,295,650 | 6.4 |
| 55년 | 413,160,000 | 12,083,880 | 2.9 | 26,926,750 | 6.5 | 26,926,750 | 6.5 |

㈜1.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없을 수 있지만, 기본보험기간 동안 최저사 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2. 상기 예시된 연복리B 2.4%는 '평균공시이율(2.75%)'과 '공시이율 연복리 2.4%(2024년 4월 현재)' 중 작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3.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4. 상기 예시된 연복리A 2.4%는 '공시이율 연복리 2.4%(2024년 4월 현재)'를 적용합니다.
- 5. "최저보증이율 가정"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 연복리 0.5%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해약환급금입니다.
- 6.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시 해약환급금은 변동됩니다.
- 7.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납입기일(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8. 상기 예시된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 9.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에는 유지보너스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며, 유지보너스 발생 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은 해당 시점에 발생하는 유지보너스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계약해당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0.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A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 순보험료(⑤) 총액과 평균사업비(⑥)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⑥: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값

- 가입기준 : 40세, 표준체

| 상품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가격지수(%) | | 가입금액 (만원) |
|------------------------------|--------|--------|-----------|-------|--------------|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 | 95세만기 | 전기납 | 남자 | 112.3 | 10,000 |
| 보증비용부과형) 보너스형 10%체증형 | | | 여자 | 107.2 | 10,000 |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 | 95세만기 | 전기납 | 남자 | 112.1 | 10,000 |
| 보증비용부과형) 보너스형 15%체증형 | | | 여자 | 106.8 | |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 | 95세만기 | 전기납 | 남자 | 111.9 | 10,000 |
| 보증비용부과형) 보너스형 20%체증형 | | | 여자 | 106.5 | |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 | 95세만기 | 전기납 | 남자 | 106.0 | 10,000 |
| 보증비용부과형) 라이트형 10%체증형 | | | 여자 | 101.0 | |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 | 95세만기 | 전기납 | 남자 | 105.7 | 10,000 |
| 보증비용부과형) 라이트형 15%체증형 | | | 여자 | 100.6 | 10,000 |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 | 95세만기 | 전기납 | 남자 | 105.6 | 10,000 |
| 보증비용부과형) 라이트형 20%체증형 | | | 여자 | 100.4 | |
| 삼성 CEO를 위한 보장정기보험(2403)(무배당, | 95세만기 | 전기납 | 남자 | 88.2 | 10,000 |
| 보증비용부과형) 프라임형 15%체증형 | 80시[인기 | '런기 II | 여자 | 82.6 | 10,000 |